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407

발의연월일 : 2018. 7. 13.

발 의 자:이원욱・김영진・황 희

윤영일 • 안호영 • 김현권

임종성 · 김철민 · 우원식

남인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건축사 자격증 대여는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의 부실 등으로 이어져 부실·불법 건축물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벌칙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.

이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 게 하거나 건축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의2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누구든지 건축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.

제1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누구든지 건축사로부터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.

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제18조제5항"을 각각 "제1 8조제6항"으로 한다.

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로 하고,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39조의3(종전의 제39조의2)제3호를 삭제하고, 제39조의4(종전의 제39조의3) 전단 중 "제39조의2제3호"를 "제39조의2"로 한다.

제39조의2(벌칙) 제10조, 제18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

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40조 본문 중 "제39조 또는 제39조의2"를 "제39조, 제39조의2 또는 제39조의3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	제10조(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
금지) (생 략)	금지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
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누구든지 건축사로부터 그
	성명을 빌려 건축사업무를 수
	행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서는
	<u>아니 된다.</u>
제18조(자격등록 및 갱신등록) ①	제18조(자격등록 및 갱신등록) ①
~ ④ (생 략)	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누구든지 건축사로부터 등
	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.
<u>⑤</u> · <u>⑥</u> (생 략)	<u>⑥</u> ・ <u>⑦</u> (현행 제5항 및 제6항
	과 같음)
제30조의2(건축사의 실무교육) ①	제30조의2(건축사의 실무교육) ①
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	
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	
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5	제18조제6
<u>항</u> 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	<u> </u>
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	
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	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건축사가 제18조에	

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1. <u>제18조제5항</u>에 따른 갱신등 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 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
2. · 3. (생 략)
<u><신 설></u>

- <u>제39조의2(</u>벌칙) 다음 각 호의 어 <u>제</u>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2. (생략)
 - 3. 제10조 또는 제18조제4항을
 <삭 제>

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
 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

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

<u>.</u>
1. <u>제18조제6항</u>
2.·3. (현행과 같음)
제39조의2(벌칙) 제10조, 제18조
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
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
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
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
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
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
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제39조의3(벌칙)
1.•2. (현행과 같음)
1. 2. (1.87) ED/

<u>준 사람 및 그 상대방</u> 4. ∼ 8. (생 략)

제39조의3(몰수·추징) 제39조의2 제3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 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 다.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.

제40조(양벌규정) 건축사사무소개 설자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 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<u>제39</u> 조 또는 제39조의2의 위반행위 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(科)한다. 다만, 건축사사무소개 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.

4. ~ 8. (현행과 같음)
<u>제39조의4(</u> 몰수·추징) <u>제39조의2</u> -
제40조(양벌규정)
제39조,
 제39조의2 또는 제39조의3